

— 구미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조례안 —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5년 10월 11일

나. 제안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5년 10월 11일

라. 상정일자 : 2005년 10월 18일

제10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복지환경국장 김 경 배

나. 제안이유

-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와 건전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제시
 - 목적, 위치, 기능과 업무, 운영요원, 시설사용허가, 개방제한, 사용자의 설비 및 변상책임, 사용제한 등
- 운영에 관한 시 직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

라. 참고사항

- 청소년기본법 제18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수 영

-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표현과 정보화 능력함양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의 관련운영 조례로 제정하는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